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가단1453 판결 [건물명도]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8. 20.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1부터 갑7,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2. 5. 30. 피고에게 4,43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23. 3. 24.부터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명도이행 각서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건물을 명도해야 한다.

판사 박이규

별지